#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4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노웅래·최종윤·윤재갑

신동근 · 장철민 · 우원식

오영훈 · 고영인 · 이용빈

조오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 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하 여 처벌하고 있음.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반복적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있으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의 처벌 외에, 행위별로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살인 등으로 처벌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무게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

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속적 괴롭힘범죄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라.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 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 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 바.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안 제7조).
- 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2조).
- 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함(안 제13조).
- 자.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조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 차.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한 사람,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비밀 누설 금지 위반죄, 불이익 처우의 금지위반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 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속적 괴롭힘범죄"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마. 그 밖에 위 각 목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2. "행위자"란 제1호의 행위를 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속적 괴롭힘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치 등) ①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2. 행위자에게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중단할 것을 통보 및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계속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경고
  - 3. 피해자에게 제5조제2항의 잠정조치 요청, 제15조제3항의 피해자

지원조치 신청, 제19조의 피해자지원기관의 지원 등을 안내

- 4.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제19조의 피해자지원기관에 연계
- ②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신고, 고소, 고발을 접수한 경찰서의 장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를 즉 시 중단할 것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 재한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잠정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 이후 그 조치의 변경,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에 따른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병과하여 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잠정 조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잠정조 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의 청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잠정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잠정조치) ①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 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 1. 행위자가 행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 금지
- 2.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의 위탁
- 5.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조치와 제5호 조치는 병과할 수 없다.
- ③ 제7조에 따른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引致)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제10조제 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

- 호 및 제5호의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잠정조치는 2회에 한하여,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잠정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① 법원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 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⑧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⑨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나 제8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불 기소처분을 한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계속적인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하기 전에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제1항의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원은 해당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잠정조치와 관계되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연장, 변경 또는 취

소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의 조사·심리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제8조(동행영장의 방식 등) ①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지속적 괴롭힘범죄 행위의 요지,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동행영장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잠정조치의 집행방법 등) ① 제6조제7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

- 을 집행하는 사람은 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 지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후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에 있어서 그 결정(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잠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 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 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항고와 재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 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 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⑥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6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1조부터 제4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잠정조치 결정에 관한 조사·심리 및 항고·재항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힙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하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본다.
- 제14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피해자지원조치 등

제15조(피해자지원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피해자지원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피해자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9조의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
-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 3.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 등에 대한 보호조치
-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지속적 괴롭힘범죄 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 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 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 桥)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제17조(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피해자지원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 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이를 "피해자지원기관"이 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벌칙

- 제20조(지속적 괴롭힘범죄)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가중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 은 후 다시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한 사람
  - 2.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속적 괴롭힘 범죄를 범한 사람
- 2.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③ 지속적 괴롭힘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 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지 속적 괴롭힘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 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④ 법원이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인권에 관한 교육
- 3. 그 밖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3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4항에 따른 잠정조치(검사가 제5조제7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위반죄) 제17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위반죄) 제1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